

의안번호	제 315 호
의 결 연 월 일	2023년 월 일 (제 회)

충청북도 주민자치회 활성화 지원 조례안

발 의 자	노금식 의원 등 7인
발의연월일	2023년 5월 31일

충청북도 주민자치회 활성화 지원 조례안

(노금식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315
----------	-----

발의연월일 : 2023년 5월 31일

발의자 : 노금식, 최정훈, 김성대,
오영탁, 이옥규, 이태훈,
임영은

1. 제정 이유

- 충청북도 시·군 각 읍·면·동에 설치된 주민자치회의 운영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풀뿌리 자치 실현과 주민의 민주적 참여의식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 조례의 목적과 용어를 정의함(안 제1조~제2조)
- 주민자치회 활성화에 관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 주민자치회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 지도·감독과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제7조)
-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 나. 관련부서 협의: 충청북도 행정국 행정운영과와 협의함.
- 다.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첨부
- 라. 조례안예고 : 2023. 6. 2. ~ 2023. 6. 7.(5일간)

충청북도 주민자치회 활성화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 시·군 각 읍·면·동에 설치된 주민자치회의 운영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풀뿌리 자치 실현과 주민의 민주적 참여의식을 높이는데 기여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민자치”란 주민이 지역 의제의 발굴, 공론, 실행 등을 통해 지역사회의 결정과정에 참여하는 체계를 말한다.
2. “주민자치회”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읍·면·동 단위로 설치되고, 주민으로 구성되어 주민자치 활동 강화에 관한 사항을 수행하는 조직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주민자치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시·군과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자치회의 자율성과 다양성을 보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 사업) 도지사는 주민자치회와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주민자치 교육 및 역량강화
2. 주민자치회 운영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3. 주민자치회에 대한 평가 및 우수사례 공유
4.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주민자치회 교류사업
5. 그 밖에 주민자치회 활성화를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보조금 지원 등) 도지사는 제4조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시·군 또는 주민자치 운영단체 등에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지도·감독) 도지사는 제5조에 따라 지원한 보조금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행정지도 및 감독을 할 수 있다.

제7조(홍보) 도지사는 주민자치회 활성화를 위하여 제4조에 따른 사업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충청북도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홍보할 수 있다.

제8조(포상)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민자치회 위원 및 도민에게 「충청북도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1. 주민자치회 활성화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2. 도정의 발전 또는 주민자치 발전에 공헌이 현저한 경우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법령

□ 지방자치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생략)

2.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

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나.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

다. 생활이 어려운 사람의 보호 및 지원

라. 노인·아동·장애인·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

마.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설립·운영

바. 감염병과 그 밖의 질병의 예방과 방역

사. 묘지·화장장(火葬場) 및 봉안당의 운영·관리

아. 공중접객업소의 위생을 개선하기 위한 지도

자. 청소, 생활폐기물의 수거 및 처리

차. 지방공기업의 설치 및 운영

(이하 생략)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②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

제184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한 지도와 지원)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시·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하여 조언 또는 권고하거나 지도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필요하면 지방자치단체에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② 국가나 시·도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처리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재정지원이나 기술지원을 할 수 있다.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조언·권고 또는 지도와 관련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시·도지사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주민자치회의 설치) 풀뿌리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하여 읍·면·동에 해당 행정구역의 주민으로 구성되는 주민자치회를 둘 수 있다.

제28조(주민자치회의 기능) ① 제27조에 따라 주민자치회가 설치되는 경우 관계 법령,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일부를 주민자치회에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② 주민자치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주민자치회 구역 내의 주민화합 및 발전을 위한 사항
2. 지방자치단체가 위임 또는 위탁하는 사무의 처리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관계 법령, 조례 또는 규칙으로 위임 또는 위탁한 사항

제29조(주민자치회의 구성 등) ①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그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지역사회에 대한 봉사자로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하며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주민자치회의 설치 시기, 구성, 재정 등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참고하기 위하여 주민자치회를 시범적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비용추계서

1. 사업개요

- 충청북도 시군 읍면동에 설치된 주민자치회의 운영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풀뿌리 자치 실현과 주민의 민주적 참여의식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함.

2. 비용 발생 요인

- 주민자치회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3. 관련조문

- 도지사는 주민자치회와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안 제4조)

4.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체

- 주민자치교육 및 역량강화 48,000천원
- 주민자치회 프로그램 개발 9,000천원
- 주민자치회 교류사업 8,000천원
- 주민자치회 활성화 지원 55,000천원

나. 추계 결과 : 연간 120,000천원, 2023년부터 향후 5년간 600,000천원 소요

다. 재원조달방안 : 도비(자체재원)

